

의안 번호	제3349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11월 2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12월 11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-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피해구제 대응체계 확립

3. 주요내용

- 가.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일 조정
(안 제18조의2 및 별표 4)
- 나.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반영(안 제19조의2)
- 다.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(안 제23조제15항)
- 라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·특수경력직 공무원의 ‘연가 가산 기준’을 변경하고 ‘시간외 근무수당’ 대신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이며,
- 이 외에 담당 부서의 검토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현재 인사정보시스템 상 ‘총괄’, ‘서무’ 권한자가 부서원의 특별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예방책 등 의견 확인할 필요 있음.
- 아울러, 안 제18조의2에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“영”으로 약칭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하고 있으나 이후 안 제19조의2에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라고 법령명을 그대로 전체 기재함에 따라 이를 약칭(“영”)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**자구수정** 사항 첨부

[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**자구수정** 사항 첨부]

김포시 조례 제 호

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47조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1의2과” 를 “별표 1의 2와” 로 한다.

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

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, “1에 해당하는” 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, “사항” 을 “경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 “별표 2” ” 를 “별표 2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천재지변 기타” 를 “천재지변, 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, “범위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” 을 “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가” 를 “사람이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법 제30조의4에 따라” 로,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가” 를 “사람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 (대통령령)」 을 준용한다” 를 “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을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직무수행 기타” 를 “직무수행, 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준용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한다.

제18조의2 중 “한다)제7조제1항” 을 “한다) 제7조제1항” 으로, “2년” 을 “5년” 으로, “별표4” 를 “별표 4” 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 “ 별표 3”의 기준에 의한”을 “별표 3의 기준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영 7조”를 “영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“5일 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「김포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29조 중 “준용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4]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8조의2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(즉,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: 가산 안 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: 3일 가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복무선언) ① 김포시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 “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 “이라 한다)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선서는 “별표 1”의 선서문에 의한다.</p> <p>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<u>별표1의2</u>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의2 (비밀엄수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<u>자</u>는 다음 각 호의 <u>1</u>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법령에 <u>의하여</u> 비밀로 지정된 <u>사항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 <p>제4조 (근무기강 확립) ① (생 략)</p> <p>② 공무원은 “<u>별표 2</u>”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 (복무선언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47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----- <u>별표 1의2</u>와 -----.</p> <p>제3조의2 (비밀엄수)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<u>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따라</u> ----- <u>경우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4조 (근무기강 확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 -----.</p>

제7조 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 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 3의

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, 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 4의

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.

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

제7조 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천재지변, 그 밖에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른 ----- 범위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 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에

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-----

-----.

② ----- 사람이 -----

-----.

제10조 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에

따라 -----
사람은 -----
-----.

② ----- 사

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외의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 (대통령령)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
제12조 (복장등) ① (생략)

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8조의2 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.

<신설>

람이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」을 따른다. -----
----- 직무수행, 그 밖의 -----

--.

제12조 (복장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따른다.

제18조의2 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-----
----- 한다)

제7조제1항-----
5년 -----
----- 별표 4-----.

제19조의2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

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

제23조 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“별표 3”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② ~ ④ 삭제

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⑥ ~ ⑨ 삭제

⑩ 풍해·수해·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⑪ ~ ⑭ (생략)

<신설>

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3조 (특별휴가) ① -----
----- 그 밖의 -----
-----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-----
-----.

⑤ -----

따른 -----
영 제7조-----
-----.

⑩ -----

5일 이내-----
-----.

⑪ ~ ⑭ (현행과 같음)

⑮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「김포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」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

제29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
은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을 준용한다.

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
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
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29조 (준용) -----

-- 따른다.